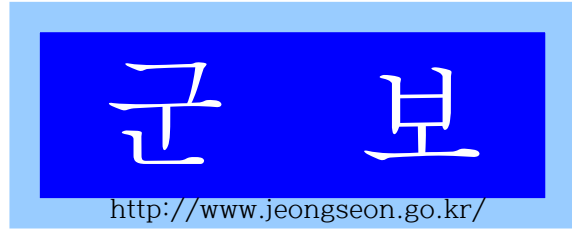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4호 2022. 12.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49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2-154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22-155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6
- 정선군 고시 제2022-156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8
- 정선군 고시 제2022-15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동탄지구)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10
- 정선군 고시 제2022-158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1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414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2-1421호 「정선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16
- 정선군 공고 제2022-1428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2-1438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
통광장) 공사 완료 공고.....23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49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

농촌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4차]을 수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지 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125백만원(국비 3,938, 지방비 2,187)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2.12.31.까지

6. 세부사업 변경계획 : 붙임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8.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56)

■ 세부사업 변경계획

사 업 명	승인내역	변경승인내역
계	6개사업	1개사업
복지회관리모델링 (사업준공)	○ 사업비 : 1,758백만원 ○ 위 치 : 북평면 북평리 223 ○ 사업량 - 리모델링 415㎡ - 부대공 1식	-
주차장조성 (사업준공)	○ 사업비 : 892백만원 ○ 위치 : 북평면 북평리 693-4 ○ 사업량 - 주차장조성 2,737㎡ - 용지매수 2,737㎡	-
북평문화센터조성 (사업준공)	○ 사업비 : 899백만원 ○ 위치: 북평면 북평리 224-2 ○ 사업량 - 문화센터조성 2,863㎡ - 용지매수 2,863㎡ - 공연장.기타 1식 - 가로등 7주	-
명품테마거리 (사업계속)	○ 사업비 : 851백만원 ○ 위 치 : 북평 6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370m, W=8~14m - 아스콘포장 3,861㎡ - 인도블록 1,034㎡, 빗물받이 38개소 - 노후관로교체공사 양안 691m - 상가간판교체 10개소	-
근대문화거리 (사업계획)	○ 사업비 : 628백만원 ○ 위 치 : 북평 7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200m, - 도막형바닥재 A=651㎡ - 조형물 제작설치 7개소 - 아케이드 보 디자인 1식 - 부대공/기타공사 1식	○ 사업비 : 716백만원 ○ 위 치 : 북평 7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140m - 도막형바닥재 A=747㎡ - 조형물 제작설치 3개소 - 아케이드 보 디자인 1식 - 용지매수 및 보상 1필지 129㎡(신설) - 센터조성 1식 224㎡(신설) - 부대공/기타공사 1식
지역역량 강화	○ 사업비 : 253백만원 ○ 사업량 - 주민교육, 견학 36회 -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6식 - 마을경영지원 1식	-

정선군 고시 제2022-154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5-174호(2005. 7. 22.)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5-72호(2015. 9. 22.)로 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7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사업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공 원	어린이공원	A=1,526㎡	어린이공원 조성 A=1,526㎡ (기반 660㎡, 휴양 30㎡, 유희 74㎡, 녹지 등 76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정선읍 봉양리	34-68	대	62	11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91-28	대	42	27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72-3	대	549	533		정선군
4	정선읍 봉양리	72-4	도	6,564	3		정선군
5	정선읍 봉양리	73-2	장	964	952		정선군
계		5필지		8,181	1,526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2-155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85-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2020. 10. 8.)로 변경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도로	소로1-23호	L=340m, B=4~10m	L=176.16m, B=1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연 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54-7	대	12,355	688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55-31	전	106	14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57-1	도	4,054	21		정선군			
4	정선읍 봉양리	54-56	대	1,124	1,124		정선군			
5	정선읍 봉양리	78-24	전	13	13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6	정선읍 봉양리	78-25	전	3	3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7	정선읍 봉양리	78-22	전	1	1	남면 문곡리 317-7	학교법 인 문곡학 원			
8	정선읍 봉양리	54-58	대	1	1		국(기획 재정부)			
9	정선읍 봉양리	78-11	전	4	4	정선읍 녹송로 36	이희열		정선농협	근저당권 설정
10	정선읍 봉양리	78-19	도	32	32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11	정선읍 봉양리	78-21	도	6	6		정선군			
계				17,699	1,907					

정선군 고시 제2022-156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2020. 10. 8.)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 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변경없음)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도로	소로1-24호	L=70m, B=10m	L=70m, B=1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정선읍 애산리	432-426	대	7,254	124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54-7	대	12,355	592		정선군
계		2필지		19,609	716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2-15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동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38호(2019.03.08.)로 최초 결정 고시 및 정선군 고시 제2019-133호(2019. 6. 21.)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동탄지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가.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동탄지구) 사업
 - 나. 명 칭 : 동탄지구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위 치	규 모	기시행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지설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	A=14,376㎡	-	A=14,376㎡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황규연
 -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5. 사업기간
 -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1. 9.
 -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사북읍 사북리	375-9	잡	14,376	14,376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 광업공단
계		1필지		14,376	14,376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2-158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577,000천원
 - 국비 (1,774,000천원), 지방비 (661,000천원), 자부담 (142,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시행계획 변경내용 별첨)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
 - 기반시설정비
 - 배수로정비, 안전확보, 문화복지공간 조성,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 커뮤니티센터 조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안길정비, 샘터정비,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 노후담장 정비

○ 역량강화

-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19년 ~ 2022년 → (변경) 2019년 ~ 202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 시행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 계획		금회 계획		증감 내역		증감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2,435 <142>		2,435 <142>		- <->	
◇ 기반시설정비		892		989		97	
- 배수로정비	216m	103	120m	103	-96m	-	사업량 감소
- 안전확보	1식	248	1식	401	-	153	사업량 증가
- 문화복지공간조성	1식	441	1식	406	-	△35	사업량 조정
-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	104m²	59	104m²	59	-	-	
- 커뮤니티센터 조성	1식	41	1식	20	-	△21	사업량 감소
◇ 주택정비		916		835		△81	
- 주택철거	18호	131	16호	110	-2호	△21	사업량 감소
- 슬레이트지붕개량	24호	271 <63>	20호	237 <63>	-4호	△34 <->	사업량 감소
- 주택수리	56호	372 <79>	44호	346 <79>	-12호	△26 <->	사업량 감소
◇ 마을환경개선		254		281		27	
- 안길정비	1식	87	1식	155	1식	68	사업량 증가
- 마을샘터정비	1식	23	1식	20	-	△3	사업량 조정
-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	7개소	58	3개소	56	-4개소	△2	사업량 감소
- 노후담장정비	65m	86	35m	50	-30m	△36	사업량 감소
◇ 역량강화		66		66	-	-	
- 휴먼케어	1식	36	1식	36	-	-	
- 지역역량강화	1식	30	1식	30	-	-	
◇ 제경비		449		405	-	△44	
- 기본계획비	1식	30	1식	30	-	-	
- 세부설계비	1식	49	1식	49	-	-	
- 공사감리비	1식	178	1식	178	-	-	
- 사업관리비	1식	30	1식	30	-	-	
- 석면조사비	1식	14	1식	14	-	-	
- 안전진단	1식	42	1식	42	-	-	
- 잡지출	1식	106	1식	62	-	△44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414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2월 0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22-1421호

「정선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정선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시행('19.2.15일) 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에 농도 개선 목표등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등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다. 군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4조)
- 라. 미세먼지 저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안 제6조)
- 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사. 미세먼지 정보제공(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2. 09. ~ 12. 29 (20일)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목) 18: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참조: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제 출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 연 락 처 : 033-560-2332, 팩스 : 033-560-2589)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오염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저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배출 저감계획
3.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 한다)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의 조기폐차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원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군민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관계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428호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12월 0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22-1438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공사 완료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3-294호(1973. 7. 12.)로 최초 결정, 강원도 고시 제2009-285호(2009. 8. 21.)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2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

나. 명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7호·중로2-2호, 광장:교통광장)]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면적(㎡)	금회 시행	
도 로	소로2-47호	L=140m, B=8m	-	L=9.5m, B=8.5m	
도 로	중로2-2호	L=240m, B=15m	-	L=240m, B=8.5m	
광 장	교통광장	-	A=1,812㎡	A=1,145㎡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명 : 정선군수(건설과)

나.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일 : 2022. 9. 30.